

【 5 】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8.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 자치역량 강화 및 사무와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군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작은 정부구현을 위하여 인력을 축소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본청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4조)

- 문화공보실을 폐지(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사업소로 업무 이관)
- 재무과 분리 → 회계과로 신설(읍·면 재무담당 폐지 → 본청으로 이관)
- 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하며 재무과를 세무과로 명칭 변경.
- 실과소별 분장사무 세부조정

나.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정함.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한다.

동조제2항제1호중 마목 내지 타목을 카목 내지 러목으로 하고, 편목중 “기획” 다음에 “공보”를 추가하여 머목으로 하며, 동항 동호에 마목 내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군정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바. 언론·홍보 자료의 수집 및 방영
- 사. 군정의 계몽선전 및 홍보
- 아. 홍보매개체의 보급·육성
- 자. 공고, 고시업무 및 게시판 관리
- 차. 출판사, 인쇄소의 등록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제2호로 하며, 저목 내지 커목을 고목 내지 도목으로 하고, 터목중 “새마을” 다음에 “체육진흥”을 추가하여 로목으로 하며, 저목 내지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저. 체육공원 조성
- 처. 국민 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활동 지원
- 커.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
- 터.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 협조
- 페. 국제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허. 자유수호 계몽 및 관련단체 육성 지원

동조동항제3호중 “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하고, 파목중 “지적에 관한 사항”을 “지적, 차량 등록, 건설기계에 관한사항”으로하여 하목으로 하며,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동조동항 “제5호”를 “제4호”로하고, 동호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하여, 다목 내지 마목을 마목 내지 사목으로 하고,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세 구체업무

라.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동조동항동호중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너목을 각각 삭제하고, 차목을 아목으로 더목 “기타 세무, 세외수입, 경리, 용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타세무,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으로하여 자목으로 한다.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회계과장

가. 세출예산의 경리

나. 물품의 구입, 조달, 출납, 보관관리

다. 지출원 사무

라.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보관

마. 회계관계공무원의 관리

바. 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 위임관리 국유재산의 처분·대부 및 관리

사. 물품출납, 보관 및 처분

아. 차량운영 및 운전원 관리

자. 청사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차. 기타 경리, 용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동조동항제6호중 머목 내지 서목을 서목 내지 저목으로 하고, 어목 “기타 사회, 위생, 가정, 부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회, 위생, 가정, 부녀,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하여 저목으로 하며, 머목 및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청소년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버.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

동조동항제7호중 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및 지도·감독

동조동항제8호중 바목 내지 저목을 사목 내지 처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동조동항제10호중 다목, 아목, 자목을 각각 삭제하고, 라목 내지 사목을 다목 내지 바목으로 하며, 차목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을 "도로(도시계획도로 포함), 하천, 철도사업의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으로하여 사목으로하고, 카목을 아목으로 한다.

동조동항제11호중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 내지 카목을 나목 내지 차목으로 하며, 타목 "기타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을 "기타 도시행정, 지역개발, 광고물에 관한 사항"으로하여 파목으로 하며, 카목 및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광고물 관리

타. 소도읍 가꾸기 사업

동조동항제12호 사목 "공공시설 건립 추진"을 "공공시설 건립추진 및 하자보수"로 한다.

제5조제3항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중 "농업기술센터의 위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을 "농업기술센터의 위치와 관할구역은"으로하여 제2항으로하고 [별표3]을 별지와같이 한다..

제9조제1항을 본조로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내지 제8호를 제2호내지 제7호로하여 본조로하며, 제2항은 삭제한다.

제11조중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제1호중 바목 내지 타목을 파목 내지 머목으로 하고, 바목 내지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 바.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 사. 문화재, 전적 기념물의 보호 관리
- 아. 향교, 사찰의 재산관리 지도
- 자. 문화예술단체의 지도·육성
- 차. 관광선전 및 개발
- 카. 관광지, 유원지 개발 및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
- 타. 군지편찬 및 자료수집·분석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은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고 시설을 인계인수가 완료된 때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 제7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사업소장”으로 하고, 제11조 제2항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한다.
 2. 양주군사편찬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사업소장”으로 한다.
 3.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2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4.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5.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제6조제4항제1호중 “문화공보실장”을 “총무과장”으로하고, 제9조제1항중 “체육청소년담당”을 “체육업무담당”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중 “문화공보 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체육청소년담당주사”를 “체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6. 양주군물품관리조례 제30조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7.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5조제3항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 항중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노인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제12조제1항제3호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노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별표 2 】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5조 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선암리 보건진료소	양주군 은천면 선암리 185	선암 1·2리 도하 1리 운암리 하패 2리 옹암리
상수리 보건진료소	양주군 남면 상수리 산56	경신리 상수 1·2리 두곡리 입암 2리 광적면(효촌리, 덕도리)
만송리 보건진료소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산154-2	삼송 1·2리 만송 1·2리
연곡리 보건진료소	양주군 백석면 연곡리 267-8	연곡 1·2리 홍죽 1·2리 광적면(우고리, 비암1·2·3리)

【별표 3】

농업기술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제8조 제2항 관련)

명 청	위 치	관 할 구 역
양주군농업기술센터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 278	양주군 전역

【 별표 4 】

사업소의 명칭·위치

(제11조 제2항 관련)

사업소명	위치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 132
양주군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 회천읍 고암리 산 13-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기획감사실</u>, <u>문화공보실</u>, <u>민원실</u>, <u>총무과</u>, <u>재무과</u>, <u>사회복지과</u>, <u>환경보호과</u>, <u>농림축산과</u>, <u>지역경제과</u>, <u>건설과</u>, <u>도시과</u>, <u>주택과</u>, <u>민방위재난관리과</u>를 둔다.</p> <p>②(생 략)</p> <p>1. 기획감사실장</p> <p>가. ~ 라.(생 략)</p> <p>(신 설)</p> <p>마. ~ 타. (생 략)</p> <p>파. 기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경영수익, 장기발전추진 행정에 관한 사항</p> <p>2. 문화공보실장</p> <p>가. 문화공보 계획의 수립 실시</p> <p>나. 언론공보 자료의 수집 편찬</p> <p>다. 군정의 계몽선전 및 보도</p> <p>라. 홍보매개체의 보급 육성</p> <p>마. 자치법규의 공고제재, 공고, 고시업무 및 계시판 관리</p> <p>바. 출판사, 인쇄소의 등록</p> <p>사. 자유수호 계몽 및 관련단체 육성 지원</p>	<p>제4조(실·과의 설치) ①-----</p> <p>----- <u>기획감사실</u>, <u>총무과</u>, <u>민원봉사과</u>, <u>세무과</u>, <u>회계과</u>, <u>사회복지과</u>, <u>환경보호과</u>, <u>농림축산과</u>, <u>지역경제과</u>, <u>건설과</u>, <u>도시과</u>, <u>주택과</u>, <u>민방위재난관리과</u>-----.</p> <p>②(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p> <p>가. ~ 라.(현행과 같음)</p> <p>마. <u>군정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u></p> <p>바. <u>언론·공보자료의 수집보도 및 방영</u></p> <p>사. <u>군정의 계몽선전 및 홍보</u></p> <p>아. <u>홍보매개체의 보급·육성</u></p> <p>자. <u>공고·고시업무 및 계시판 관리</u></p> <p>차. <u>출판사, 인쇄소의 등록</u></p> <p>카. ~ 러.(현행 마목~타목과 같음)</p> <p>머. 기타 기획, 공보, 예산, 감사, 법무, 경영수익, 장기 발전추진 행정에 관한 사항</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아.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p> <p>자. 문화재, 전적기념물의 보호관리</p> <p>차. 향교사찰의 재산관리 지도</p> <p>카.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p> <p>타. 관광선전 및 개발</p> <p>파. 관광지, 유원지개발 및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p> <p>하. 군지편찬 및 자료수집 분석</p> <p>거. 체육공원 조성</p> <p>너. 국민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활동 지원</p> <p>더.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p> <p>러.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협조</p> <p>더. 국제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p> <p>버.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p> <p>서. 기타 문화관광, 공보행정, 생활체육, 청소년에 관한 사항</p> <p>언. 유기장에 대한 허가단속(시설 '99. 5. 10)</p> <p>4. 총무과장</p> <p>가. ~ 어.(생 략) (신 설)</p> <p>저. ~ 커.(생 략)</p> <p>터. 기타 인사, 서무, 새마을, 통계, 전산, 통신에 관한사항</p>	<p>(삭 제)</p> <p>2. 총무과장</p> <p>가. ~ 어.(현행과 같음)</p> <p>저. 체육공원 조성</p> <p>처. 국민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활동 지원</p> <p>커.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p> <p>더.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협조</p> <p>퍼. 국제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p> <p>허. 자유수호 계몽 및 관련단체 육성 지원</p> <p>고 ~ 도(현행 저목~커목과 같음)</p> <p>로. 기타 인사, 서무, 새마을, 체육진흥, 통계, 전산, 통신에 관한사항</p>

현 행	개 정 안
<p><u>3. 민원실장</u></p> <p>가. ~ 타.(생 략) (신 설)</p> <p>과. 기타 민원, 부동산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p> <p><u>5. 재무과장</u></p> <p>가. ~ 나.(생 략) (신 설)</p> <p>(신 설)</p> <p>다. ~ 마.(생 략)</p> <p>사. 세출예산의 경리</p> <p>아. 물품의 구입, 조달, 출납, 보관관리</p> <p>자. 지출원 사무</p> <p>초 (생 략)</p> <p>카.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보관</p> <p>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리</p> <p>파. 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 위임관리 국유재산의 처분·대부 및 관리</p> <p>하. 물품출납, 보관 및 처분</p> <p>거. 차량운영 및 운전원 관리</p> <p>너. 청사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p> <p>더. 기타 세무, 세외수입, 경리, 용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p>	<p><u>3. 민원봉사과장</u></p> <p>가. ~ 타.(현행과 같음)</p> <p>파.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p> <p>하. 기타 민원, 부동산관리, 지적, 차량등록, 건설 기계에 관한 사항</p> <p><u>4. 세무과장</u></p> <p>가. ~ 나.(현행과 같음)</p> <p>다. 지방세 구제업무</p> <p>라. 지방세 범인세무조사</p> <p>마. ~ 사.(현행 다목~마목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아(현행 차목과 같음)</p> <p>(삭 제)</p> <p>자. 기타 세무,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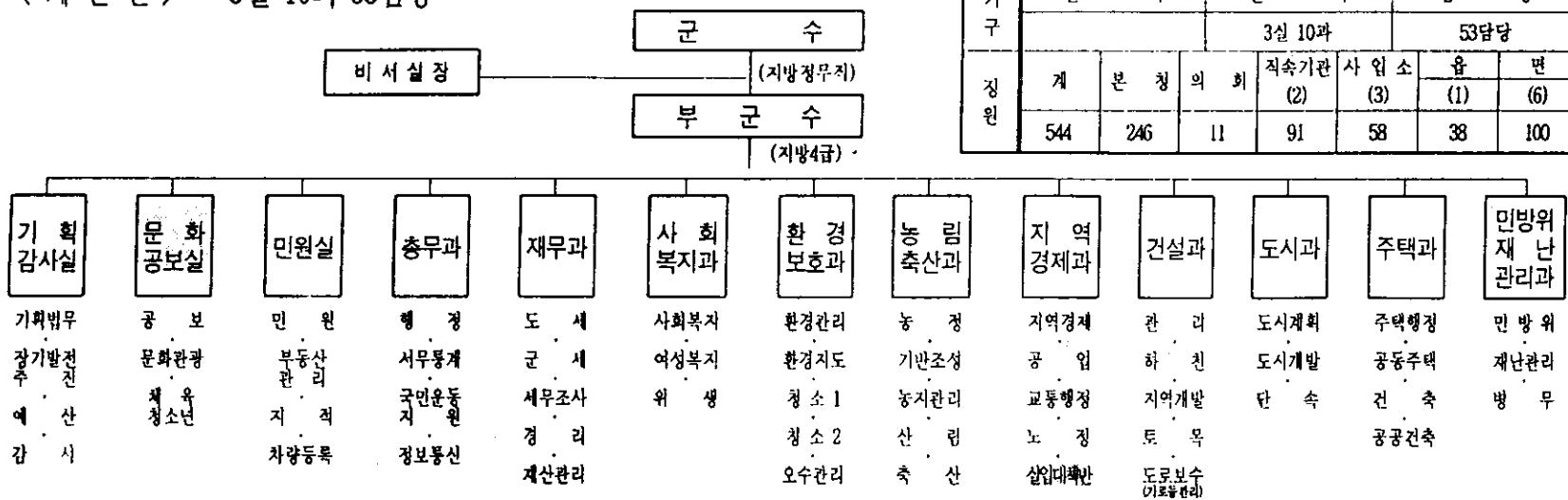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5. 회계과장</p> <p>가. 세출예산의 경리</p> <p>나. 물품의 구입, 조달, 출납, 보관관리</p> <p>다. 지출원 사무</p> <p>라.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보관</p> <p>마. 회계관계공무원의 관리</p> <p>바. 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 위임관리 국유재산의 처분·대부 및 관리</p> <p>사. 물품출납, 보관 및 처분</p> <p>아. 차량운영 및 운전원 관리</p> <p>자. 청사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p> <p>차. 기타 경리, 용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p>
6. (생 략)	6.(현행과 같음)
가. ~ 러.(생 략)	가. ~ 러.(현행과 같음)
(신 설)	<p>며. 청소년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p> <p>버.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p>
(신 설)	<p>서. ~ 저.(현행 머목~서목과 같음)</p> <p>처. 기타 사회,위생, 가정, 부녀,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p>
어. 기타 사회,위생, 가정, 부녀업무에 관한 사항	
7.(생 략)	7.(현행과 같음)
가. ~ 자.(생 략)	가. ~ 자.(현행과 같음)
(신 설)	<p>차.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및 지도·감독</p> <p>카(현행 차목과 같음)</p>
초(생 략)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가. ~ 마.(생 략)	가. ~ 마.(현행과 같음)
(신 설)	<p>바.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p> <p>사. ~ 저.(현행 바목~저목과 같음)</p>
바. ~ 저.(생 략)	

현 행	개 정 안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생 략)	10.(현행과 같음)
가. ~ 나.(생 략)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중기 및 특수차량의 관리운영	(삭 제)
라. ~ 사.(생 략)	다. ~ 바.(현행 라목~사목과 같음)
아. <u>소도용 가꾸기 및 광고물 관리등 개발행정</u>	(삭 제)
자. <u>소규모 주민숙원사업</u>	(삭 제)
차. <u>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u>	사. 도로(도시계획도로 포함), 하천, 철도사업의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카.(생 략)	안(현행 카목과 같음)
11. (생 략)	11.(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현행과 같음)
나. <u>도시계획구역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u>	(삭 제)
다. ~ 카(생 략)	나. ~ 차.(현행 다목~카목과 같음)
(신 설)	카. <u>광고물 관리</u>
(신 설)	타. <u>소도용가꾸기 사업</u>
타. <u>기타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u>	파. 기타 도시행정, 지역개발, 광고물에 관한 사항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가. ~ 바.(생 략)	가. ~ 바.(현행과 같음)
사. <u>공공시설 건립추진</u>	사. <u>공공시설 건립 추진 및 하자보수</u>
아. ~ 자.(생 략))	아. ~ 자.(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8조(설치) ①(생 략)	제8조(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관내 농업인들에게 보다 신속한 농업기술 상 담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를 둔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센터의 위치와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3”과 같다.</p> <p>제9조(소장) ①(생 략)</p> <p>② 농업인상담소에 상담소장을 두며 상담소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 한다.</p>	<p>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별표3”과 같다.</p> <p>제9조(소장) (현행과 같음) (삭 제)</p>
<p>제10조(업무) ①(생 략)</p> <p>1.(생 략)</p> <p>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p> <p>3. ~ 8.(생 략)</p> <p>② 농업인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내방 농업인 상담 및 전화상담</p> <p>2. 농업인 교육 및 지도</p>	<p>제10조(업무) ①(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 (삭 제)</p> <p>2. ~ 7.(현행 제3호~제8호와 같음) (삭 제)</p>
<p>제13조(업무) (생 략)</p> <p>1.(생 략)</p> <p>가. ~ 마.(생 략)</p> <p>(신 설)</p> <p>바. ~ 타.(생 략)</p>	<p>제13조(업무) (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p> <p>가. ~ 마.(현행과 같음)</p> <p>바.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p> <p>사. 문화재, 전적기념물의 보호관리</p> <p>아. 향교 사찰의 재산관리 지도</p> <p>자. 문화예술단체의 지도·육성</p> <p>차. 관광선전 및 개발</p> <p>카. 관광지, 유원지개발 및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p> <p>타. 군지편찬 및 자료수집 분석</p> <p>파. ~ 머.(현행 바목~타목과 같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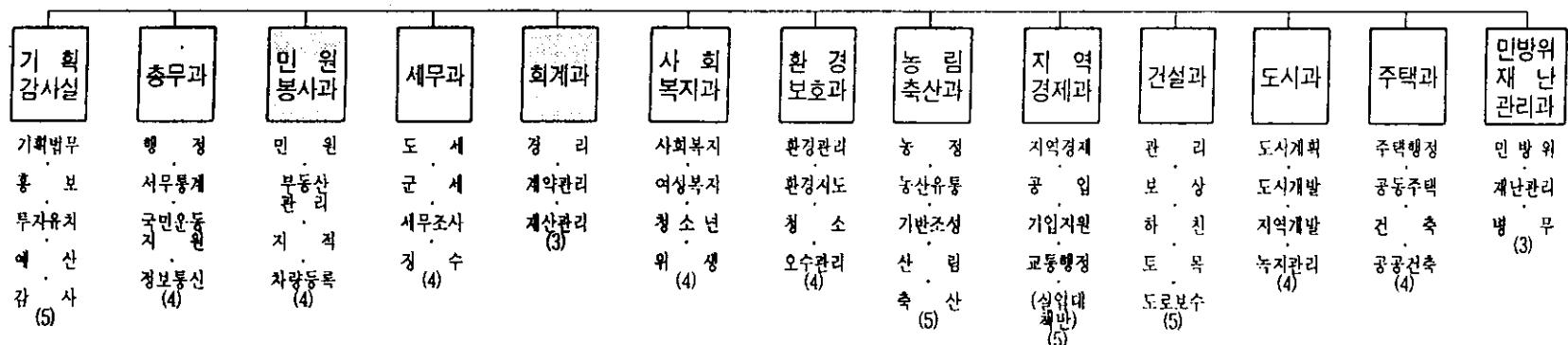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3. 위생환경사업소</p> <p>가. <u>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u></p> <p>나. <u>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 발전</u></p> <p>다. <u>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u></p> <p>라. 그 밖에 <u>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관계되는 사항</u></p>	(삭 제)

□ 본청 기구 개편내용(양주군)
 <개 편 전> - 3실 10과 53담당



-301-

<개 편 후> - 1실 12과 54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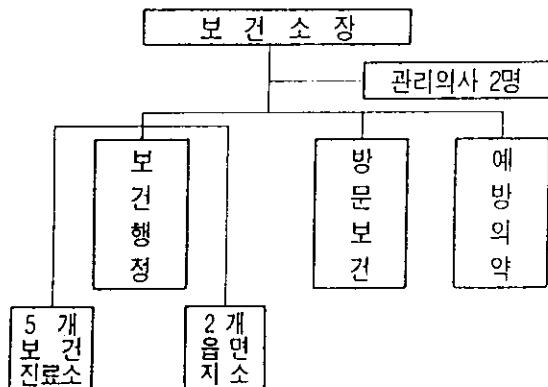


기구·인력 조정계획(양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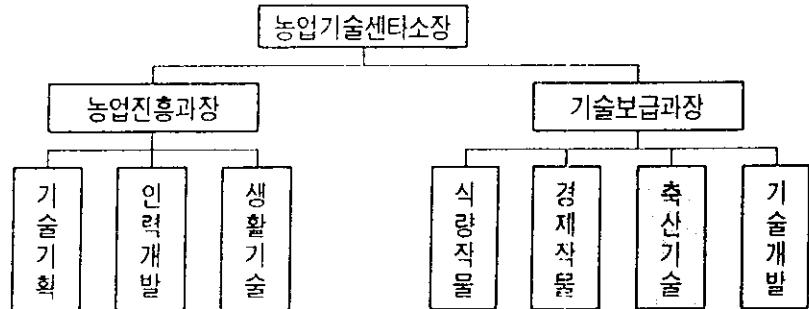
구 분		기 구						정 원									
		부 청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계		부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현		
		실·과	담당					읍	면	읍	면				현	읍	면
현 행		3실 10과	53	3 담당 2 지소 5진료소	2과 7담당 7농민상담소	3사업소 6 담당	7읍·면 1 출장소 2과 32담당	544	246	11	91	58	138	38	100		
조	1999년	1실 12과	54	3 담당 2 지소 4진료소	2과 7담당	3사업소 10 담당	7읍·면 1 출장소 2과 25담당	529	247	10	81	62	129	35	94		
정	2000년	1실 12과	54	3 담당 2 지소 4진료소	2과 7담당	2사업소 8 담당	7읍·면 1 출장소 2과 25담당	512	251	10	77	48	126	35	91		
안	2001년	1실 12과	54	3 담당 2 지소 4진료소	2과 7담당	2사업소 8 담당	7읍·면 1 출장소 2과 25담당	496	254	10	77	51	104	29	75		

□ 지속기관 기구 개편내용(보건소, 농촌지도소)

<개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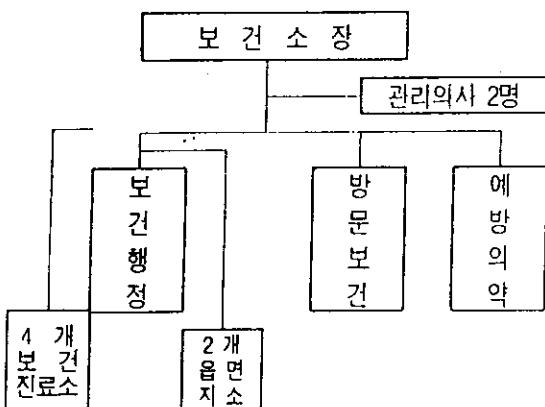
⇒ 3담당 2지소 5진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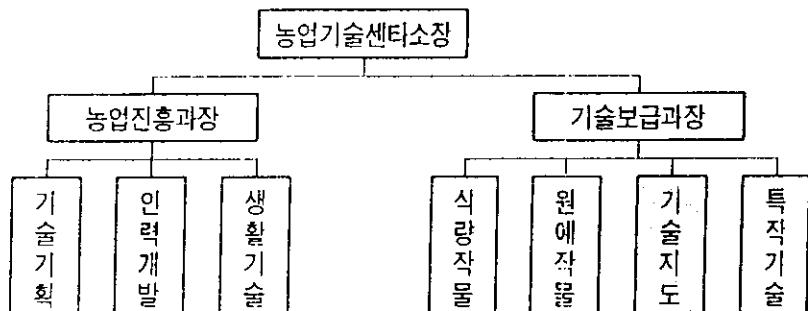
⇒ 2과 7담당 7농민상담소

-303-

<개편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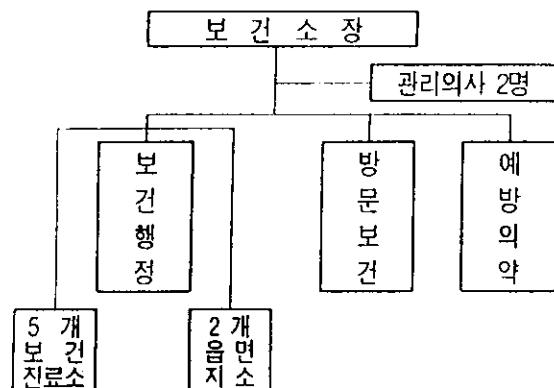
⇒ 3담당 2지소 4진료소(-고읍진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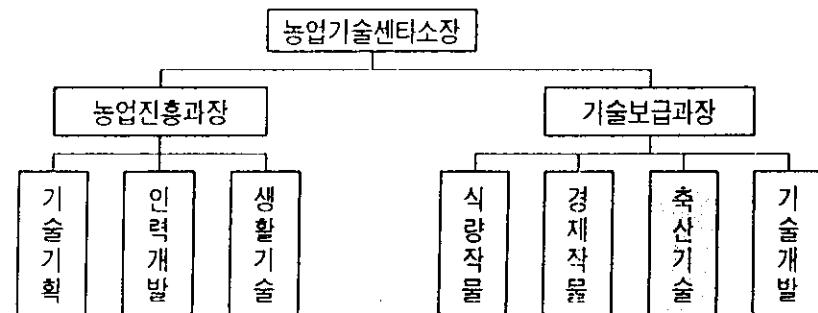
⇒ 2과 7담당

□ 직속기관 기구 개편내용(보건소, 농촌지도소)

<개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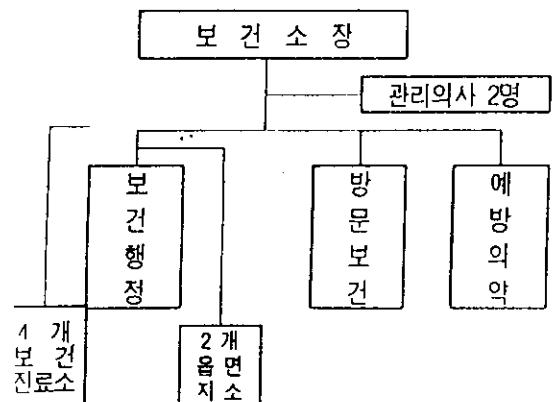
⇒ 3담당 2지소 5진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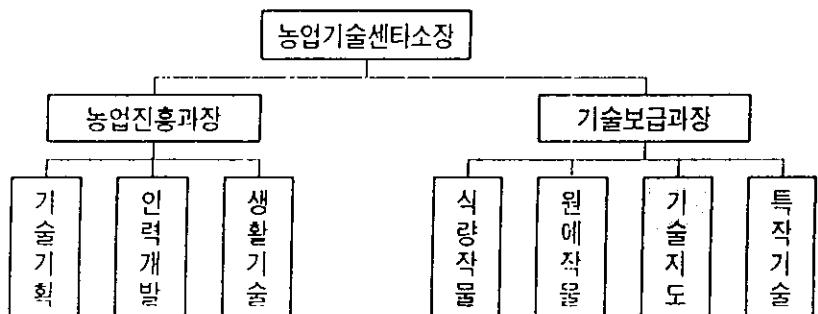
⇒ 2과 7담당 7농민상담소

-304-

<개편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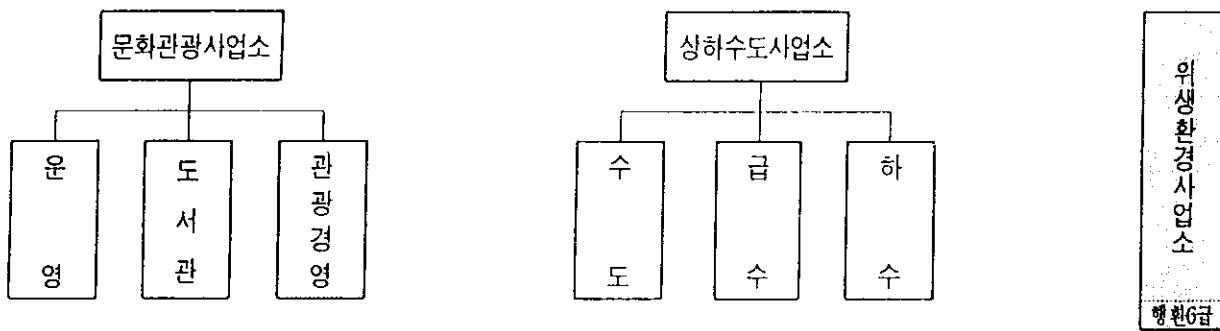
⇒ 3담당 2지소 4진료소(-고읍진료소)



⇒ 2과 7담당

□ 사업소 기구 개편내용

<개 편 전> → 3사업소 6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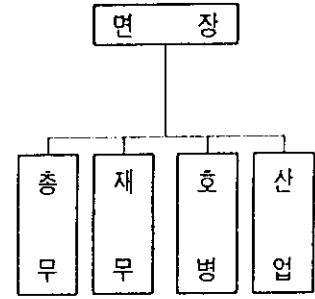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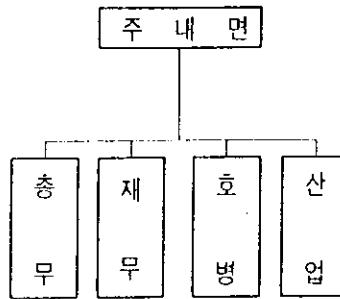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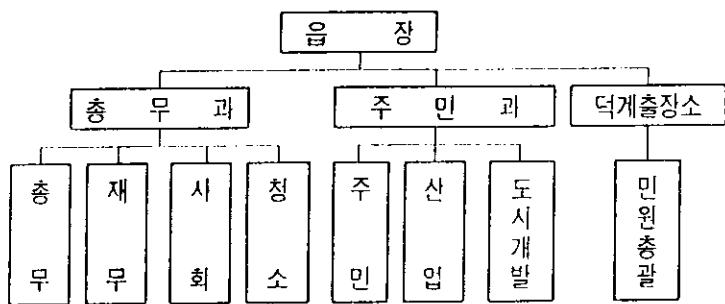
- 305 -

<개 편 후> → 2사업소 8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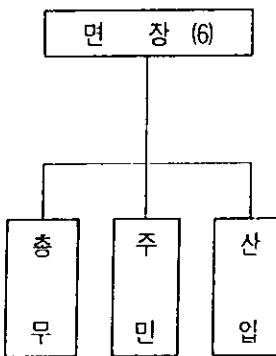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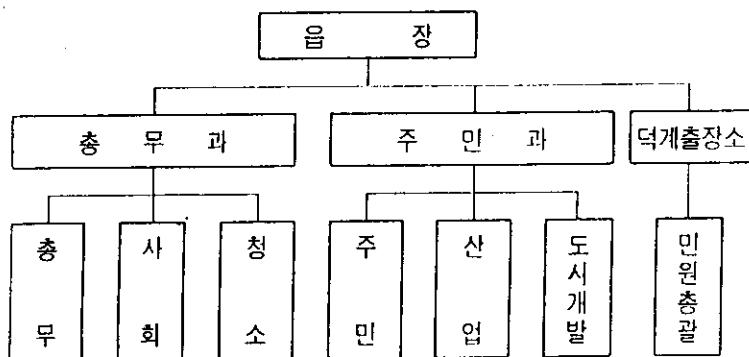


□ 읍·면 기구 개편내용

<개 편 전> - 7읍·면 1출장소 2과 32담당



<개 편 후> - 7읍·면 1출장소 2과 25담당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자치역량 강화 및 사무와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군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작은정부 구현을 위하여 인력을 축소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본청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 함(안 제4조)

- 문화공보실을 폐지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사업소로 업무 이관)
- 재무과 분리 → 회계과를 신설(읍·면 재무담당 폐지 → 본청으로 이관)
- 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하며 재무과를 세무과로 명칭 변경
- 실과소별 분장사무 세부조정 내역
 - 〈 기획감사실 〉
 - 문화공보실의 공보업무

〈 총 무 과 〉

- 문화공보실의 체육관련 업무
- 문화공보실의 자유수호 계몽 및 관련단체 육성 지원

〈 민원봉사과 〉

- 건설과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 회 계 과 〉

- 재무과의 경리, 용도, 영선, 재산관리에 관한사항

《 사회복지과 》

- 문화공보실 청소년 관련업무

《 환경보호과 》

-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및 지도·감독
- 총무과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관리 및 자연보호활동

《 농림축산과 》

- 농업기술센터의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 건설과 》

- 도로(도시계획도로 포함), 하천, 철도사업의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 도시과 》

- 건설과의 소도읍 가꾸기 및 광고물관리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주택과 》

- 공공시설 하자보수업무 신설

《 농업기술센터 》

- 읍·면 농업인상담소 폐지

《 문화관광사업소 》

- 문화공보실의 문화·관광업무

《 상하수도사업소 》

- 환경보호과의 오염하천정화사업추진

《 위생환경사업소 》

- 폐지[민간위탁 추진 (2000. 7. 1 예정)]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정함.

- 민간위탁에 따른 경과규정을 정함(2000. 7. 1 예정)
- 명칭 및 분장사무의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시·군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협의결과 통보(경기도 도정 12200-730, 1999. 8. 10)호)
 - 지방자치단체 2단계구조조정 추진지침(1999. 6.17 시·군 조직관리관계관회의)
 - 2단계 지방구조조정추진 보완사항(1999. 6. 30 시·군 조직관리담당회의)